



Korean Tax Newsletter

2026년 3월

CONTENTS

세법개정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세무동향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안내
- 국세청, 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예규판례

○ 법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신설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를 고가의 현물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이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대도시 내 호텔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백화점 시행 할인행사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을 백화점 임대수수료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유상증자(조특법 §13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양도차익에 대해 조특법 §13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41의 2)이 적용되는지 여부

-
-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법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 시 주주 소득의 구분(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

세법개정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6.3.17.(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 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 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26.3.31.(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3.1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보도자료\(Link\)](#)

■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조특법 §23)

〈개정안〉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95% ⇒ 100%, 1년 한시)
-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1년 한시)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 26)

〈개정안〉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1년 한시)

- 매도 시점별 공제율: (~5.31 일) 100%, (~7.31 일) 80%, (~12.31 일) 50%

○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 27)

〈개정안〉 환헛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1년 한시)

■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세법 §4)

〈개정안〉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과세 특례, 환헛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세무동향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안내

국세청은 '26.3.20.(금)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전세계 140 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 우리나라는 '24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최초 신고기한은 '26.6.30.임(12 월말 결산법인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3.2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안내

-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1. 예정) 전이지만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 제도를 시행
-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 수렴
-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하였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 월말까지 신고*

* 사전신고는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신고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가 아니며, 사전신고를 통해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기한까지 수정 제출 가능

국세청, 4 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

국세청은 12 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경우 '26.4.30.(목)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4.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결산서류 등 공시

-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 간편 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 공시의 경우 가산세 부과

○ 출연재산 등 보고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

-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
*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국세청은 '26.4.2.(목) 기업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청 60 주년인 2026 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4.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 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4 월부터 전면 시행
-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 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1·2 순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조사 착수 20 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통지도 받게 됨

○ 「중점검증항목」 사전 공개

-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10 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하여 공개
- 1)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 2)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
- 3)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
- 4) 근로 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
- 5)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 6)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
- 7)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
- 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 9)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
- 10)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예규판례

[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 두 30809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 1830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2024. 12. 31. 법률 제 206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1 조 제 5 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사안

원고들이 구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다시 위 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 28 조 제 1 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 21 조 제 5 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음.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원칙일뿐더러,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법인세법령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공과금이 구 법인세법 제 21 조 제 5 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여전히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음(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 헌바 9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밖에 없음

기본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및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음(형법 제 13 조, 제 14 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7 조).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장애인고용법 제 33 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일뿐더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장애인고용법 제 28 조 제 1 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1997. 12. 31. 개정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들을 모범에 포괄적 정의 규정

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개정 전후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령이 입법되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거나, 구 법인세법령에 이르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법원]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 두 35801 판결, 파기환송)

■ 쟁점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사안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사내이사로서 있는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1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각 마쳐짐. 피고는 위탁자 지위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 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님.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함(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 다 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 두 34929 판결 참조)

(…) 소외 1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자신이 사내이사로서 있는 이 사건 법인에 이전하는 내용의 제 1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은 제 1 변경계약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제 2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 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음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소외 1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음.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

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외 1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 바,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5 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5 항의 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법원] 신설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를 고가의 현물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이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 두 37008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
2.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사안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고가의 현물출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하 '출자자')이 회사(이하 '피출자법인')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출자자가 피출자법인에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와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을 배정받아 피출자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짐. 따라서 현물출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출자자의 재산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함께 가짐. 그 결과,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이 과다계상되어 피출자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피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그와 같은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대가관계를 가지면서 병존하는 현물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한 재산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등 시가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함.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라면 이는 단지 장부상으로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함.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교환차익의 존재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신설법인이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피출자법인에 다른 자산이 없는 이상 아직 손익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출자자가 현물출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 41 조는 내국법인이 매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 조 제 2 항 제 4 호 가목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주식 등의 액면가가

아니라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의 규정은, 이 사건에서처럼 법인이 아닌 개인이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 63 조 제 1 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은 신설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1 주당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령 규정의 내용 역시 이 사건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함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에 있어 사외유출 및 그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대도시 내 호텔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 지 0792, 2026.1.15., 취소)

■ 쟁점

호텔의 취득을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토지 및 지상건물(용도는 숙박시설이며, 이하 “쟁점호텔”이라 함)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1 조 제 1 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과 일반음식점을 승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호텔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관광숙박업 및 일반음식점업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 13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 제 3 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 지점의 설치에 대하여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것을 취득세 중과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지점 설치와 관련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4.10. 선고 99 두 161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 두 1008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4.21. 이사회이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활용한 투자와 임대수입 창출’을 위해 쟁점호텔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3.4.24. 쟁점호텔을 취득한바, 당초 투자 및 임대 목적으로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호텔 취득 직후부터 기존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받는 등 쟁점호텔을 임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고 쟁점호텔 취득 전 관광숙박업을 한 이력도 없어, 쟁점호텔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운영기간이 약 8 개월에 불과하고, 관광호텔 등급 결정 기간 및 등급 결정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관광호텔 등급결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결정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호텔을 운영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4.9.24. 쟁점호텔의 호텔등급결정을 받은 직후인 2024.9.25. 전문호텔사업자인 AAA 에게 쟁점호텔을 임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백화점 시행 할인행사로 고객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입점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을 백화점 임대수수료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 서 1768, 2026.2.25., 취소)

■ 쟁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백화점등에 입점한 업체와의 '임대(을)계약' 관계에서 위 백화점등의 판촉행사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발급한 쿠폰등이 위 입점업체에서 사용됨에 따른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이 위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상품매출과 임대매출 등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백화점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이하 "쟁점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고객이 임대매장에서 청구법인의 포스(POS)기기로 상품매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매대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매출을 하며, 고객이 판촉행사(쿠폰할인과 백화점카드할인으로 구성) 기간 중 임대매장에서 할인가액으로 상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18년 제2기~202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객이 위 판촉행사시 할인받은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하고, 그 할인을 "쟁점할인"이라 함)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매출인 임대수수료(해당 계약에 따라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것)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할 임대료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다는 문언이 없는 등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환급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백화점등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수료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과 해당 입점업체'가 쟁점임대차계약에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위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한다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약정을 포함하거나 이외에 묵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도한 판촉행사에서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쿠폰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할 때 적용받은 쟁점할인액을 위 임대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그러나 (...)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위 입점업체도 청구법인의 쟁점할인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용역의 매출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음

(...)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쿠폰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쟁점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쟁점할인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로 인식하게 되므로 이러한 쟁점할인의 실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임대수수료의 인식은 청구법인과 입점업체 간의 쟁점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임대차계약서의 샘플을 보면 제 12 조 제 2 항에서 청구법인이 제휴신용카드 및 기타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매출관리시스템상 정산화면 출력본을 보면 판매금액과 쟁점할인액으로 보이는 매출에누리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입점업체에게 송금하는 지불액은 쟁점할인액이 포함된 판매금액에서 임대수수료만이 차감된 것으로 나타남을 감안하면 입점업체도 쟁점할인의 실시 여부와 더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으면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인 임대수수료에서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국세청] 유상증자(조특법 §13 에 따른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양도차익에 대해 조특법 §13 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438, 2025.11.25.)

■ 질의

피투자법인 설립 후 7 년 이내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설립 후 7 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신주에 근거하여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해당 무상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13 조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2013.9 월부터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인 본건 펀드의 지분을 보유함
- 2015 년경, 본건 펀드는 당시 벤처기업이었던 주식회사 ○○(이하 ‘피투자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이하 ‘본건 신주’)를 취득하였음
- 2015. 피투자법인(2013.11 월 설립)과 우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신주 총 **주를 인수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본건 펀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 약 **주(이하 ‘쟁점 신주’)를 간접 취득하였음
- 한편, 피투자법인은 2023.3.30.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시행하여 본건 펀드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상주를 배정하였음(무상증자비율 1:6)
- 본건 펀드가 보유한 피투자법인의 주식수는 위 무상증자를 계기로 **주(이하 ‘본건 무상주’)만큼 증가하게 되었고, 질의법인은 간접적으로 보유하던 피투자법인의 주식 **주에 무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주(이하 ‘쟁점 무상주’)를 더하여 총 **주를 간접 보유하게 되었음
- 이후, 본건 펀드는 2025.3.28. 본건 신주 및 본건 무상주 전부를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고, 질의법인 역시 간접 보유하던 쟁점 신주와 쟁점 무상주에 대해 양도차익을 확보하게 되었음

회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3 조(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동 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대해서도 쟁점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증법 §41 의 2)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3979, 2026.1.23.)

■ 질의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주 주주에게 높은 배당율로 배당을 하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보통주 20,000 주, 우선주 5,000 주를 발행
-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배당받을 권리는 있으나, 배당률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명시되지 않음
- A 법인은 영업실적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임

주주명	계	보통주	우선주
丙	5,000 주	-	5,000 주
丁	20,000 주	20,000 주	-
계	25,000 주	20,000 주	5,000 주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로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에만 배당을 하거나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로 배당을 하는 등 정관으로 정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을 통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차등배당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우선주 주주와 보통주 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우선주 발행 및 배당 등 배당 구조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우선주 주주의 정상적인 권리 범위를 초과하여 보통주 주주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 조의 2 에 따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사전-2025-법규국조-1132, 2026.2.2.)

■ 질의

합병법인의 국조법 제 30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6 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결손금의 차감 여부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의 100% 자회사 A 법인(“합병법인”)이 미국 100% 자회사 B 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도록 하였고, 이때 피합병법인 주식은 신주 교부 없이 전량 소각함
-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합하여 부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함
- 한편, 합병법인은 2024 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미국 C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해당 배당수익으로 인하여 ‘24 사업연도 말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함
- 합병법인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합병 시 승계한 질의법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및 장기미지급이자를 상환함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6 조 제 1 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 시 주주 소득의 구분(의제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서면-2024-소득-2359, 2026.2.20.)

■ 질의

자기주식 이익소각 시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양도자들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함
-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당초의 취득목적은 어느정도 달성함에 따라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고자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